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284 발의연월일: 2025. 1. 7.

발 의 자:고동진·성일종·송언석

박준태 • 김소희 • 김예지

송석준·김상훈·박덕흠

김종양ㆍ이달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AI의 발전과 함께 AI 기술 인재확보 국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게 되면서 세계는 AI 패권 확보 및 관련 우수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고,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 및 산업계에서는 해외의 고급 기술 전문가 영입 및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

하지만 국내의 인구 대비 해외전문인력 비중(0.09%)은 싱가포르(6.6%), 호주(0.3%), 일본(0.3%), EU(0.2%), 대만(0.2%) 등 해외 사례 대비 최저 수준이며, 국내의 해외인재 유입 매력도 순위('20년 36위 → '23년 43위) 또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영국, 호주,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은 인공지능기술과 첨단산업의 고급인재 유치를 위하여, 사증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인공지능기술 분야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첨단전략산업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특별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사증 발급 기준과 절차를 완화 및간소화(사증 심사기간 단축, 제출서류 간소화, 부모 등 동반입국 허용범위 확대, 체류기간 확대 등)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사증 발급의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첨단전략 산업 및 인공지능기술 분야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과 절차 등에 따라 특별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특별사증의 대상, 종류, 신청, 발급, 체류기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렁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8조의2(사증 발급의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반도체, 소프트
	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
	차전지, 배터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첨단전략산업 및 인공
	지능기술 분야의 해외 고급인
	재 유치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
	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준과 절차 등에 따라 특별사증
	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특별사증의 대상, 종류, 신
	청, 발급, 체류기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u>정한다.</u>